

1. 개정이유

임신 중인 군인이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0021호, '24. 1. 16. 공포, '25. 1. 17. 시행)됨에 따라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요양비, 상이연금,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상이연금 청구서 서식에 건강손상자녀 해당 여부 표시란 신설 (안 별지 제5호서식)
- 나.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 서식에 건강손상자녀 해당 여부 표시란 신설 (안 별지 제16호서식)
- 다. 사망조위금 청구서 서식의 청구인 정보란에서 사망자 정보란을 분리하여 신설하고, 사망자 정보란 내에 건강손상자녀 해당 여부 표시란 신설 (안 별지 제28호 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방부령 제 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상이연금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개월			
청구인 기재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계급·호봉	군번	건강손상자녀 해당 여부 [] 해당 [] 미해당			
	형벌사항 [] 있음 [] 없음	[] 수사 진행 중 [] 형사재판 진행 중 [] 형 확정 (형명:) (확정일: . . .) (형량:)				
	퇴직 당시 소속 부대명		퇴직 연월일			
	학자금 대부	[] 있음 [] 없음	미납액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분할상환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 여부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미수급					
소속 부대 기재란	공무상	부상·질병 장소		장해 상태		
	부상·질병	제3자 가해사실 [] 있음 [] 없음		상이등급 급 항 공무상 요양사실 [] 있음(승인번호) [] 없음		
	형벌사항 [] 있음 [] 없음	[] 수사 진행 중 [] 형사재판 진행 중 [] 형 확정 (형명:) (확정일: . . .) (형량:)				
	대부사항	대부 종류	대부액	상환액	미납액	미납액 상환방법
	[] 있음	전세대부				[] 일시상환
	[] 없음					[] 분할상환
	확인자	인사 담당자	계급	성명	(인)	전화번호: () -
		()군 제 부대 장 직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첨부서류	청구인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소속 부대장	1.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 1부 2. 상이등급이 적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 1부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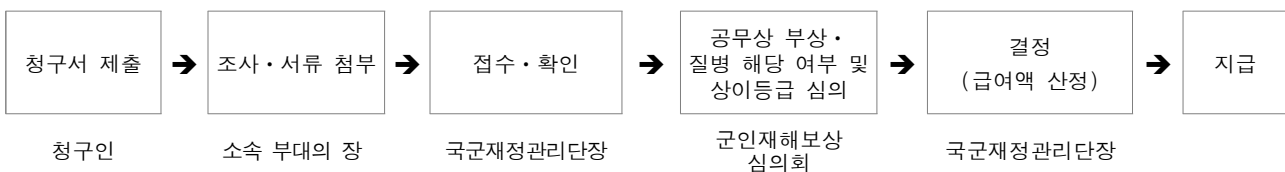
1. 청구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3. 청구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4. 건강손상자녀 해당 여부 란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의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 해당·미해당 중 해당하는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건강손상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계급·호보란 및 군번란은 작성하지 않고, 퇴직 당시 소속 부대명 란에는 공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군인이 소속되었던 부대명을, 퇴직연월일 란에는 자녀의 출생연월일을 적으십시오.

◆ 「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군인이 소속된 군의 군인으로 본다.

5. 청구인 기재란의 형벌사항란과 소속 부대 기재란의 형벌사항란에는 있음·없음 중 해당하는 [] 안에 "√" 표시를 하고,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형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 중·형사재판 진행 중·형 확정 중 해당하는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 소속 부대 기재란의 형벌사항란을 작성하는 경우 소속 부대의 인사담당자는 형벌사항을 따로 조사·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6. 소속 부대 기재란의 공무상 부상·질병란은 제3자의 가해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 안에 "√" 표시를 한 후 첨부하여 제출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에 가해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7. 소속 부대 기재란의 대부사항란은 있음·없음 중 해당하는 [] 안에 "√" 표시를 한 후 미납된 대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 대부액, 상환액 및 미납액을 적으십시오. 이 경우 미납액 상환방법은 청구인이 희망하는 상환방법을 확인하여 일시상환·분할상환 중 해당하는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개월
요양 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손상자녀 해당 여부 [] 해당 [] 미해당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계급	군번	소속 부대명
	부상명·질병명	부상·질병 연월일시	부상·질병 장소
	평소 건강상태 [] 건강 [] 요주의 [] 지병	제3자 가해 여부 [] 가해자 있음 [] 가해자 없음	
	요양비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지급 시 필요하오니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 기간	입원기간	외래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처방에 따른 투약기간도 치료기간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하여 송부합니다.

년 월 일

()군 제 부대장 직인

담당부서명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국군의무사령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관이 명확하게 기록된 진단서 1부 2.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서의 치료를 승인한 의결서 3. 그 밖에 민간병원 진료기록 등	수수료 없음
	소속 부대의 장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1부 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부상·질병 경위 조사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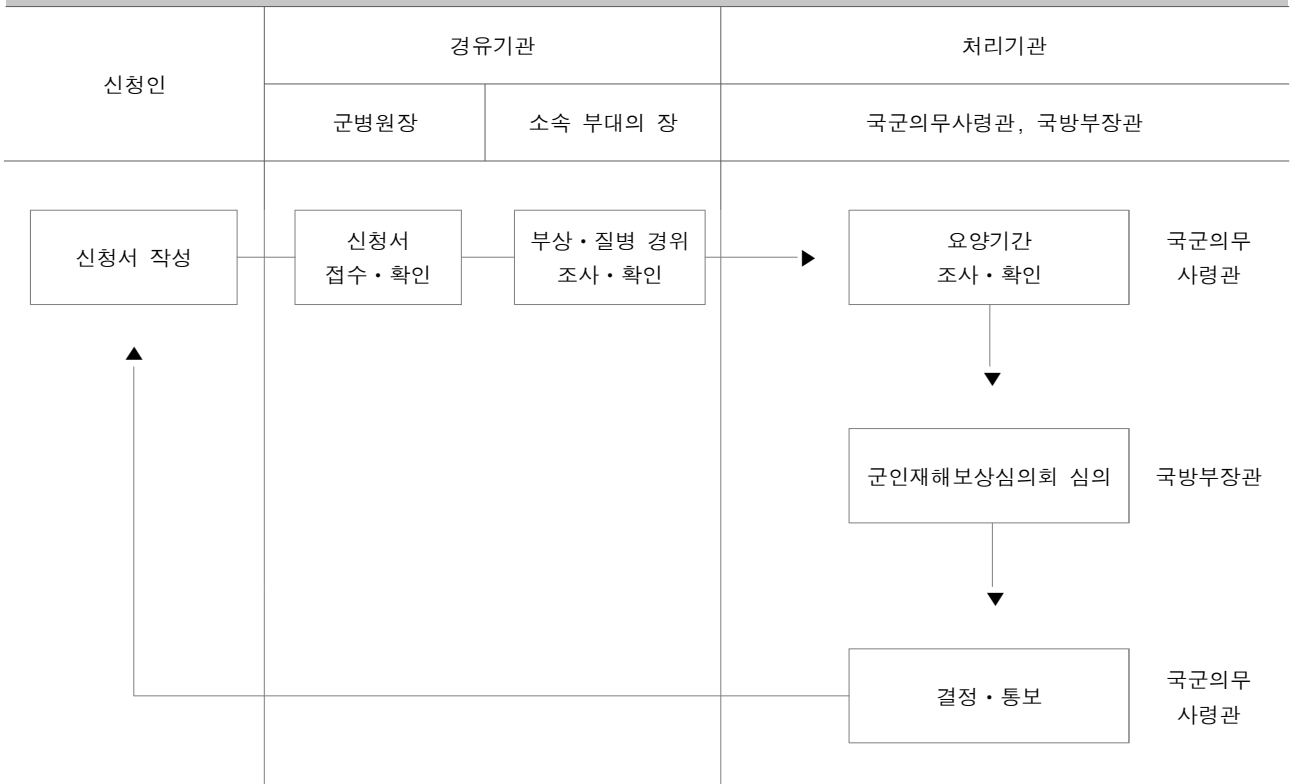
1. 건강손상자녀 해당 여부 란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의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 해당·미해당 중 해당하는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건강손상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계급란 및 군번란은 작성하지 않고, 소속 부대명 란에는 공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 임신한 군인이 소속되었던 부대명을, 부상·질병 연월일시 란에는 자녀의 출생연월일을 적으십시오.

◆ 「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군인이 소속된 군의 군인으로 본다.

2. 요양군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3. 요양군인의 부상명·질병명란에는 진단서상의 부상명 또는 질병명을 적으십시오.
4. 요양군인의 부상·질병 연월일시란에는 질병의 성질상 불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시각까지 쓰고, 부상·질병이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5. 요양군인의 평소 건강상태는 건강진단 결과통보서에 적힌 바에 따라 해당하는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6. 요양기간란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요양기간을 적으십시오.
- ※ 요양군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망조위금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	------	------	-----

청구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계급		군번	
	다른 군인의 동일급여 청구 여부	[] 해당 (소속 군: , 성명: , 관계:) [] 해당 없음		

사망자 정보	사망자 성명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사망연월일	사망자와 청구인과의 관계 청구인의 ()	건강손상자녀 해당 여부 [] 해당 [] 미해당

소속 부대 기재란	사망 당시 계급·호봉	가족 중 군인	
	소속 부대명		
	국가·지방자치단체부담 동일급여 수령 여부	[] 수령 (지급기관명: , 금액: 원) [] 미수령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군 제 부대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하여 보냅니다.

년 월 일

()군 제 부대장 직인

담당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첨부서류	1.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양하던 군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청구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3. 청구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실명확인통장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4. 사망자 란의 건강손상자녀 해당 여부 란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의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 해당·미해당 중 해당하는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 「군인 재해보상법」 제41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군인이 소속된 군의 군인으로 본다.

5. 청구인 기재란의 다른 군인의 동일 급여 청구 여부란에는 지급대상 군인이 2명 이상일 경우 동일 사망자에 대하여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다른 군인의 동일급여 청구 여부를 확인한 후 적으십시오.
6. 소속 부대 기재란의 사망 당시 계급·호봉란에는 반드시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해당 군인의 계급·호봉을 적으십시오.
7. 소속 부대 기재란의 국가·지방자치단체부담 동일급여 수령 여부란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사유로 인한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 안에 "√" 표시를 하시고, 수령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기관명과 금액을 적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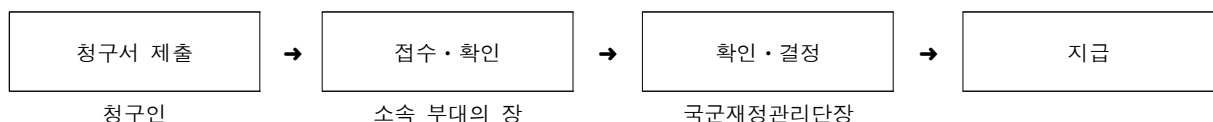
※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 해당 소속 부대장은 청구서를 이송하기 전에 반드시 지급대상 군인이 2명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선순위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망조위금 청구권자 순위(「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 참조)

사망자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순위	비고
군인의 - 배우자 - 부모 - 배우자의 부모	해당 군인	* 수급대상 군인이 2명 이상인 경우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군인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군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해당 군인에게 지급
군인	배우자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제1순위: 배우자 제2순위: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가.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나. 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다.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에서 사망한 군인의 직계비속인 군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군인에게 지급되되, 군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순위자에게 지급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